라. 거동 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의 예방접종 관리

관리 원칙

1. 거동 불편자: 「의료법」에 따른 요양병원, 정신병원 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(촉탁의가 지정된 시설만 해당) 생활자 중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자
2. 보건소는 거동 불편자가 생활하는 기관에서 요청 시 다음과 같이 접종 시행
   ① 요양병원, 정신병원은 위탁계약 체결 후 기관 내에서 자체 접종 후 비용상환 신청
   ②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 요양 중인 고령 환자의 경우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 또는 촉탁의에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권고
   ③ 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가 의료기관 소속이면 소속기관에서 위탁계약 체결 후 해당 기관 의료진이 공급받은 백신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접종
   ④ 사회복지시설 촉탁의가 개인 자격인 경우와 촉탁의가 없는 경우 보건소가 접종 관리
   * 개인 자격 촉탁의가 보건소 사업에 국가지원으로 협조할 경우 촉탁의를 통한 접종이 가능하며, 예방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건소가 관리하도록 함
   ⑤ 사회복지시설 촉탁의는 가급적 관할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 소속 의사로 권고

1) 거동 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 범위

○ 거동 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란 「의료법」에 따른 요양병원, 정신병원 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(촉탁의가 지정된 시설만 해당) 생활자 중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만 65세 이상인 자

○ 「의료법」에 따른 요양병원 정의

- 요양병원 : 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30개 이상의 요양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, 제3조의2)
- 정신병원 : 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신병원

○ 사회복지사업 운영 기관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) 중 촉탁의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

- 노인의료복지시설
  - 노인요양시설 : 치매 ·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· 요양,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(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제1항제1호)
  -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: 치매 ·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· 요양,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(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제1항제2호)

- 노인주거복지시설
  - 양로시설: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(「노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제1호)
- 장애인 거주시설: 거주 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· 요양 ·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(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1호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[별표4])
- 정신요양시설: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(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3조제6호)
- 노숙인재활시설: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(「노숙인복지법」 제16조제1항제3호)
- 노숙인요양시설: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(「노숙인복지법」 제16조제1항제4호)

2) 요양병원 및 사회복지시설별 사업 방식

구분	촉탁의 유무	촉탁의 소속	사업 방식
요양병원, 정신병원	–	–	•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업무 위탁 계약 체결 후 위탁의료 기관으로 사업 참여
사회복지시설	촉탁의 있음	의료기관 소속	•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사업 참여 –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부터 백신 배정 – 촉탁의가 주도하여 예진, 접종, 등록 실시 – 예방접종 시행비는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에 상환 •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의 관할 보건소가 상이한 경우, 두 기관 간의 거리·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할 보건소가 접종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
		개인 자격	• 신청기관에 한하여 사회복지시설 관할 보건소가 접종 관리 * 촉탁의 협조가 있을 경우 촉탁의의 예진/접종이 가능하나, 시행비 청구는 불가하고, 백신 제공과 예방접종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가 담당
	촉탁의 없음	-	• 신청기관에 한하여 보건소가 접종 관리*

* 보건소 접종 관리: ① 촉탁의가 없는 경우, 보건소는 위탁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이 단기적으로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접종하도록 안내, ② 보건소가 보건소 백신으로 직접 접종, ③ ①의 촉탁의 계약이 없을 시, 보건소 관리 하에 인근 위탁의료기관이 방문하여 접종하고 시행비 상환

3) 예방접종 기록 전산 등록 및 비용상환

가) 요양병원, 정신병원

○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바로 전산시스템에 등록

*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시설의 경우 실시한 접종력은 보건소 등을 통하여 당일 입력

○ 예방접종 비용상환 방식은 일반 위탁의료기관 상환방식과 동일하며, 요양병원에서 시행한 예방접종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신청 시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비용 지급

나) 사회복지시설

○ 촉탁의가 위탁의료기관 소속인 경우 일반 위탁의료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방접종 기록을 전산 등록 및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신청하며,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비용 지급

○ 촉탁의가 개인 자격이거나, 촉탁의가 없는 경우 보건소가 접종 관리 후 접종기록 전산 등록

4) 촉탁의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접종의 백신 관리

○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와 사회복지시설 관할 보건소가 다를 경우, 백신 예상 수요량은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와 사회복지시설 관할 보건소 간 상호 협의하여 제출 및 배정

– 단,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예상 수요량 제출 및 배정을 권고함

5) 촉탁의 예방접종의 기본원칙

○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

※ 안전한 접종 환경: 백신 콜드체인 유지, 접종 후 대기 장소 확보, 응급처치 세트 및 구급차 등의 안전 장비 구비